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사고 보상사업 보상범위 상향 등〉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69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5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1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23.

(3) 회 부 일 : 2026. 3.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보상의 범위를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의 사망 등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나 마비 등 중증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령상 적절한 구제는 어려운 실정임.

산모에게 발생한 중증장애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고 장기적인 간병과 재활로 인하여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에도 중증장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상향입법하고 보상의 범위에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한 산모의 중증장애</u> <u>2.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u> <u>3.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u> <u>4.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u> <u>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피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운영</u>-----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2. 검토의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은 현행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업(이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함)을 실시하고 있음.

- 보상 재원은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개설자가 각각 70%, 30%씩 부담하던 것을, 2023년 6월 법 개정(2023년 12월 14일 시행)에 따라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있음.¹⁾

1) (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4.7. 제정, 2012.4.8. 시행, 단 제46조는 2013.4.8.시행)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부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4.6. 제정) 제21조(보상재원의 부담비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국가: 100분의 70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分娩) 실적이 있는 자: 100분의 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③ 삭제 <2023. 6. 13.>

④ 삭제 <2023. 6. 13.>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6. 13.>

- 보상의 범위 및 보상금 지급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데, 보상의 범위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임.²⁾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대상 >

구분	주요 발생 사례	비고
뇌성마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 분만시 뇌로 가는 산소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뇌신경장애	뇌기형, 염색체 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산모의 과실에 의한 경우 등은 제외
산모의 사망	양수색전증 : 양수가 산모의 순환계 내로 유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산모의 호흡 곤란	
태아·신생아의 사망	태변흡입증후군 : 분만 시 태변 흡입으로 인한 태아·신생아의 호흡 곤란	

자료: 보건복지부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의 범위) 의료 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 6. 15., 2023. 12. 5., 2026. 8. 18.>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4.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

□ 개정안은 발의 당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보상의 범위가 신생아의 뇌성마비, 산모의 사망 및 태아·신생아의 사망에 국한되어 있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중증장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중증장애³⁾ 등의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발의시 시행령과 개정안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대상 >

발의 당시 시행령	개정안
-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 (중증장애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좌동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좌동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좌동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피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

□ 우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규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동 규정은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것으로,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자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⁴⁾.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법률 제정 당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부재하므로 국가가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다른 불가항력 사고들과 비교할 때 의료사고에 한하여 국가가 보상해야 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⁵⁾이 제시된 바 있음.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도입 당시 논의 >

구분	제도 도입	비용 부담
의료계	○ 제도 도입 찬성	○ 국가 전액 부담 - 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부담은 과실책임원칙에 위배
시민단체 법조계	○ 제도 도입 반대 - 보상이 과실책임 도피로 활용될 우려 -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보다 손쉬운 보상 선택 분위기 조장 - 타 분야 불가항력 사고 대비 특별히 보상할 필요성 부족	○ 의견 없음(제도 도입 반대)
정부	○ 신중한 접근 필요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은 과실책임원칙에 위배 - 의료사고 진실 규명의 부실화 초래 우려 - 타면허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 우려 - 국가의 재정 부담 가중 우려	○ (제도 도입 시) 국가와 의료기관 공동 부담

자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2231호)에 대한 검토보고(2020. 11.)에서 발췌

4)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불가항력 보상제도는 그동안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보상을 해왔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의 숙원사항을 수용하여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서, 다만 의료진의 과실이 원인이 된 의료사고임에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도피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게도 적정 수준의 책임 부담 필요성이 대두되어 보건의료기관도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법률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함.

5)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지방변호사회

- 또한, 법률 제정 당시 적용 분야를 전체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과 분만사고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⁶⁾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는 과실책임 원칙이라는 점, 일반적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 제도는 없다는 점, 관련 연구 등이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과실 보상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라, 뇌성마비아 출산 시 산과의료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처음에는 분만사고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보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음.⁷⁾

□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하여 중증장애가 발생한 산모의 경우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는 아니하였으나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나 마비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이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은 국가 재원을 고려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을 현행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법률이 2026.5.26. 공포되어 2027.5.27. 시행될 예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6) 최영희의원안은 전체 의료사고를, 심재철의원안은 분만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였음.

7) 18대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록 참조(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법안심사소위 등)

또한, 이 법 제정 당시 정부의 재정 상황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하여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3년 국가가 보상사업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황에서 보상의 범위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참고로, 제도 시행(2013년 4월) 이후 2025년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누적 보상건수는 153건, 누적 보상금 집행액은 38억 4,300만원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청구·보상 현황>

(단위: 건)

구분	청구 건수	보상 건수	보상구분				보상금액	비고
			산모	신생아	태아	뇌성마비		
총계 (‘13~‘25)	180	153	41	72	17	23	3,843백만원	기각, 각하, 취하 27건

주: 청구건수와 보상건수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감정결과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간 과실 여부 및 지급대상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한,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 발의, 2203412, 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서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을 “응급 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에 대하여 2026년

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3.30.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제2217923호)

부터 2030년까지 매년 39억원(시나리오 1)부터 78억원(시나리오 2) 등 향후 5년간 총 195억원에서 390억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음.⁹⁾

- 한편, 개정안 발의 이후 시행령 개정¹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 중 일부(보상의 범위에 산모의 중증장애 포함)가 달성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 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안)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확대한 점, ②최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된 점(대통령령 제36585호, 2026.8.18. 시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9) 동 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직접지원은 분만과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고, 의료인의 책임성 확보 및 재정부담 등 고려 시 국가의 직접보상이 아닌 현재의 책임보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2026.8.18. 개정으로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4.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안)은 불가항력 보상 대상을 분만 사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그 범위를 확대함. 법 통과와 함께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 및 유형을 구체화할 계획임.

2) 대한병원협회 (찬성)

- 불가항력 의료사고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상 범위 확대에 찬성하며, 향후 분만 외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분야까지 확대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4